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골드선물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[금-파생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금-파생형)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4.01.01 - 2014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유진투자증권, SK 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4. 02.21	법령개정 제28조	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	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
2014. 10.01	법령개정 제32조	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 기할 수 있다.	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 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 증권을 매수한다.(생략)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4. 10.01	신규	정승호	- 2001년 08월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- 2004년 02월 서울대 재무학 석사 - 2004년 01월 ~ 2007년 12월 SK 텔레콤재무관리실 회계팀 - 2008년 01월 ~ 2014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	211000 0108

			- 2014년 02월 ~ 現 삼성자산운용 Passive 솔루션팀	
2014. 10.01	말소	김선화	- 2006년 02월 서울대 식품영양학 학사 - 2006년 01월 ~ 2007년 03월 삼성물산 - 2007년 04월 ~ 2009년 02월 삼성자산운용 구조화상품팀 - 2009년 03월 ~ 現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2팀	210900 1475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 법인	1년	11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- 적정함
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- 해당사항 없음
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